#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75

제출연월일	2006. 12. 7.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개정이유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추진중인 출산장려 정책에 「산전진찰비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서 출산분위기를 조성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제3조 지원내용에 있어 현행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임부 철분제 지원 및 출생아 출산용품지원 사업에 산전 진찰비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조).
  - 산전 진찰비 : 임부기초검사, 초음파,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07년 예산반영(20,000천원)

다. 기타

O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O 입법예고(2006. 11. 10 ~ 11. 29)결과 : 의견제출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전 진찰비"라 함은 산전진찰(임부 기초검사, 초음파,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 뇨검사 등) 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1호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임부 철분제 지원
- 4. 임부 산전 진찰비 지원

제4조의 제목중 "범위"를 "자격"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둘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제3조제1호·제4호 대상자"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조제2호·제3호 대상자는 사유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 주하는 자로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전진찰료 지원 : 10만원(청구된 진찰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된 진찰료만 지원)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려금 및 산전진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및 산전진찰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읍·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및 산전진찰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1.임산부 (출생아) 성 명	2.출 생 아 주민등록 번 호		3.배우자 (보호자)성명		
4.분만 및 진료기관명	5.출생순위	① 첫째아 ③ 셋째아	② 둘째아 ④ 넷째아 이상		
6.주 소 (전화번호)		<b>☎</b> H • P			

- 7. 출산장려금 및 산전진찰비 지급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
- 8.출산용품 10만원 상품권 지급 (원하시는 상품권에 √하세요.)
- ①모아베이비 ②베비라 ③베베앙슈(해피랜드) ④아가방 ⑤알로앤루 ⑥기타(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금 및 산전진찰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주소 애기와의 관계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읍·면장 확 인

2007년 월 일

#### 거창군수 귀하

- ※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산전진찰비 명세서 1부
- ※ 참고사항
  -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이 지원 됩니다.
  - 출산용품 상품권은 둘째이후 출생아에게 지원 됩니다.
  - 산전진찰료는 출생순위 상관없이 지원되며, 진찰비 명세서 첨부시 최대 10만원이 지원되고,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첨부된 진찰료만 지원됩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장려금"이라 함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출생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전진찰비"라 함은 산전진찰(임부 기초 검사, 초음파,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생략) 1.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u>출산장려금</u> 지원 2.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3. 임부 철분제 및 출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	제3조(지원내용) (현행과 같음) 1.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2.(현행과 같음) 3. 임부 철분제 지원 4. 임부 산전진찰비 지원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u>자격</u> )
①둘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① <u>제3조제1호·제4호 대상자</u> 는 신생
는 신생아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	아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신생
로 신생아의 주소지를 거창군에 두어야	아의 주소지를 거창군에 두어야한다.
한다.	
②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임부철분제 및	②제3조제2호·제3호 대상자는 사유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거주하는 자로 한다.
<u>말한다.</u>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제5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군수는 본 조례 제 3조 각 호에 해당	①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 30만원	1. (현행과 같음)
2. 셋째아이 출산장려금 : 100만원	2. (현행과 같음)
3. 둘째아이부터 출산용품 지원 : 10만원	3. (현행과 같음)
상당 물품	
<u>〈신 설〉</u>	4. 산전진찰료 지원 : 10만원(청구된 진
	찰료가 10만원 미만일 경우 청구된 진
	찰료만 지원)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①장려금 및 산전진찰비 지원을 받고
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읍·면장에게 신	출산장려금 및 산전진찰비 지원 신청서
청하여야 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읍・면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